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관의 장
람	

제 639호
2008년 5월 26일 월요일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439호 재활용품 선별업무 대행업체 모집 공고 2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440호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5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441호 다기능승강장내 자동판매기설치운영자
공개모집공고 7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442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
위탁업체 선정 공고 9

회 람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

공 고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439호

재활용품 선별업무 대행업체 모집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선별처리위탁업체를 선정코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08. 5. 22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사업내용

- 대 상 :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
- 대행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09.12.31.까지(연간단위로 재계약)
- 업무범위 :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선별 및 잔재쓰레기 처리
- 예정단가 : 재활용품 선별처리비(잔재쓰레기 처리비 포함) 12,017원/톤 이하
- ※ 재활용품 연간반입예정량 6,206톤

2. 공고 및 접수기간 : 2008.05.26(월) ~ 2008.06.03(화)(봉인 후 제출)

3. 접수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오수팀
(☎560-4421~7)

4. 접수방법 : 인편(공무원 근무시간 내 접수하며, 우편 등 기타방법으로 불가)
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허위사실이 확인될 시 선정 취소함
- 선순위자 계약 불응 시 후순위자로 선정

5. 응모자격

- 사무실 및 선별장소는 인천지역(강화옹진군 제외) 및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

- 인천 서구 재활용품 1년 중 1일 최대 발생량의 10일간 입하량인 172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부지확보(면적:3,300㎡이상)
- 선별장내 재활용품 수집·운반차량을 계근할 수 있는 계근대 및 처리능력 10마력(12톤/시간)이상, 길이가 30m이상인 자동선별기기 확보
- 선별 후 잔재쓰레기 처리대책의 확보(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 제출 가능업체)
- 지방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

6. 적격업체 선정

- 심사방법 : 서류 및 현지 실사
- 심사기준
 - 처리시설능력(재활용품의 선별처리능력, 분류가능 품목수, 처리단가 및 재정상태 등)
 - 부지확보(반입 재활용품의 보관능력)
 - 운송여건
 - 잔재쓰레기 처리대책의 안정성
 - 공신력(공공기관 거래실적, 행정처분 등) 등
- 심사 및 선정
 - 제출된 서류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참가자격에 미달되는 부적격자(서류미필자 포함)는 심사대상에서 제외
-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1개 업체 선정
- 선순위자 계약 불응 시 후순위자로 선정
- 선정결과 : 개별통지

7. 계약체결 : 2008. 6월중

8. 계약자의 의무

- 재활용품 수집·운반업체가 수집·운반한 재활용 가능 생활폐기물에 대한 원활한 선별 및 잔재쓰레기 자체 처리
-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(월 평균 512톤 기준) 증권을 본 계약체결 후 제출(연간단위)
 - 산출기초 : 512톤 × 7개월 × 31,000원 × 1.5 = 166,656,000원

- 계약기간 : 2008. 6월 - 2008. 12. 31
- 이행보증기간 : 2008. 6월 - 2008. 12. 31
-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고, 익월 5일까지 선별 처리실적 제출
- 재활용품 선별 후, 발생 된 잔재쓰레기는 계약자 책임하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
- 잔재 쓰레기 처리 근거를 첨부하여 매달 5일이내 결과 보고
- 정당한 지시 감독과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선별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재정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

9. 구비서류

-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업체 응모 신청서 1부
- 사업계획서 1부
 - 사업개요
 - 사업자 등록증
 - 재정상태 :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등
 - 처리실적 : 최근 2년간 처리실적(증빙서류 첨부)
 - 운반거리 명시(인천 서구청~선별장)
 - 선별인원 : 피고용자 의료보험가입 증명원 등
- 선별장 부지 현황
 - 지적도 1부
 -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
 - 토지대장등본 1부
 - 토지 등기부등본(임차시 임대계약서 사본) 1부
 - 시설물 배치 평면도 1부
- 차량 및 장비현황(차량, 계근대, 자동화선별기기) 서류 1부
- 업체 및 직원 행정처분 사항
- 기타 응모 관련 증빙서류 등

10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공 고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440호

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
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20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·공시합니다.

2008. 5. 31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▣ 개별공시지가 개요

- 기준일자 : 2008년 1월 1일 기준
- 필 지 수 : 64,437필지
- ※ 결정내역 : 토지지번별 m²당 가격(개별통보)
- ※ 필지별 내역 별첨(토지정보과 비치)

▣ 이의신청 안내

- 신청기간 : 2008. 6. 1 - 6. 30(30일간)
- 신청인 :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- 결정·공고한 2008. 1.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우리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제출
-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
 -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
- 신청방법
 - 구홈페이지 <http://www.seo.incheon.kr>(고시·공고)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후

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

- 이의신청처리 : 2007. 12. 1 ~ 12. 30(30일간)

▣ 문의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[☎(032)560-4840]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441호

다기능승강장내 자동판매기설치운영자 공개모집공고

1.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개요

- 가. 설치 시기 :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
- 나. 설치 대수 : 1대 (커피 및 캔음료수 판매겸용)
 - ※ 자판기는 승강장 내 자판기 설치규격에 맞는 제품이어야함
(신청서 접수전에 승강장의 설계를 열람한후 신청하시기 바람)
- 다. 설치 장소 : 서구청 정문 건너편 다기능 버스승강장 내
- 라. 연간사용료 : 257,240원
 - ※ 자판기 설치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은 계약자가 납부함

2. 참가신청 및 접수

- 가. 기 간 : 2008. 5. 26 ~ 6. 10 (09:00 ~ 18:00)
- 나. 장 소 : 서구청 교통민원과
- 다. 신청자격 :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아래 요건 해당자

-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의 장애인
- 65세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의한 모·부자가정 세대구성원
-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에 의한 국가유공자, 유족, 가족

라. 신청서류

-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1부.
- 주민등록 등본 1부.
- 장애인복지카드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, 한부모 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등

3.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

- 가. 우선선정대상 : 관련 조례에 의거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선정
- 나. 동일순위의 경우 :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

4.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

가.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연간 사용료(다음년도 사용료는 2차년도 시작 10일전)를 우리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,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되며, 후 순위자를 계약자로 결정할 수 있음

5. 기타 사항

가. 본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공모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교통민원과(☎032-560-486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위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2008. 5. 26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442호

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 공고문
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(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) 및 동법시행령 제40조(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), 서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위탁기관 : 인천광역시 서구청

2. 위탁지정신청자의 자격요건

- ① 「건축사법」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
- ② 「건축사법」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- ③ 「국가기술자격법」(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)에 의한 옥외광고·건축·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- ④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

3.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

- ①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옥외광고, 건축,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(분야별로 검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)
- ② 사무실(30㎡ 이상)
- ③ 작업차량, 사다리, 절연저항계, 카메라, 망원경, 그 밖에 안전도검사 필요시설 및 장비

4. 위탁기간 :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(변경 가능)

5. 위탁받을 자의 임무

- 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광고물 등이 허가된 사항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.

6. 위탁지정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

① 신청기한 : 2008. 05. 22 ~ 06. 10. 18:00 까지(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)

② 접수방법 : 공고기간 내 서구청 녹지경관과로 직접제출

③ 제출서류

- 서구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5조 ③항 “별지 제5호서식(위탁지정신청서)”
- 자격, 시설기준 관련 구비서류 제출
 - 건축사 :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.
 -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: 관련증빙서류 1부.
 - 검사인력·시설·장비 등 확보 관련 증빙서류 각 1부.
 - 위탁지정 경력 증빙서류(해당시 제출) 1부.
 - 기타 업체의 자산규모, 업무수행관련 보험가입실태 등 증빙서류 1부.

7.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: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(위탁업체는 1개 업체로 선정)

8. 공고기간 : 2008. 5. 22 ~ 6. 10.

9. 기타 문의사항 : 서구청 녹지경관과 경관관리팀(☎560-4180)

2008. 5. 22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